

환경부, 건설공사장 소음규제 강화

오는 2009년부터 건설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각 5dB씩 강화된다. 또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 지역일 경우 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설현장의 저소음 기계·장비·공법 등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공공도서관 주변을 비롯 △학교 △병원시설 등의 인근지역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을 시간대별로 5dB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낮(08:00-18:00)시간에는 현행 70에서 65dB로 조정되고 아침·저녁(05:00-08:00, 18:00-22:00)에는 65에서 60dB로, 밤(22:00-05:00)에는 55에서 50dB로 강화된다. 또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낮(75→70dB) △아침·저녁(70→65dB) △밤(55→50dB) 등 각각 5dB씩 규제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기준을 강화하되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이와 함께 올 7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단지내 소음·진동에 대해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돼 있을 경우 생활소음·진동으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대상으로는 건설공사현장과 일반사업장,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고 산업단지 및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내 소음·진동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파소음에 대해서는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해 이달 15일부터 연속소음의 규제기준보다 지역·시간대별로 10dB씩 완화하기로 했다. / 奉承權기자 skbong@cnews.co.kr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강화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 및 학과 제한규정이 신설돼 비전공학과 졸업자는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갖춰야만 기사·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순수 실무경력자와 학력취득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요건을 강화해 관련 전공 또는 학과의 대졸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 한해서만 현장경력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학과에 구분없이 대졸자면 누구나 기사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코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만 현장경력이 면제된다. 또 전문대 졸업자도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경력 없이 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전공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졸자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1년과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현행 민간이 자격검정을 할 수 없도록 한 332개 종목을 대폭 정비해 의무고용 또는 사고와 연계된 자격과 공익에 직결되는 자격에 대해서만 민간이 검정치 못하게 하는 한편 각종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시험 및 심의위원회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奉承權기자 skbong@cnews.co.kr